

제 호

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:

3. 주 소:

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
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미래창조과학부장관

직인

